

강릉시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015. 6



강릉시

- 목 차 -

제1장 계획의 개요	1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
1.3 추진경위	1
1.4 계획의 내용	2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6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6
2.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6
제3장 대안의 설정 및 검토	11
3.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11
3.2 대안의 설정	12
제4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18
4.1 실시근거	18
4.2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18
4.3 협의회 심의의견	19

제1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005년 제정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승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강릉시의 실정에 맞고, 시민생활에 밀착된 공원·녹지공간을 창출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원·녹지조성이 필요하다.

시민의 요구수준에 맞도록 강릉시의 전반적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체계를 개편하고,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한다.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2]의2.개발기본계획 중 【가. 도시의 개발】 사업에 해당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제7조 제2항 관련)

1.3 추진경위

- 2014. 12 : 2030 강릉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시행
- 2015. 05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2015. 06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등의 의견수렴 예정

강릉시 공원조성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1.4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 강릉시 공원조성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나.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일원

다. 면적 : 도시공원 12개소(1,417,237㎡)

1) 근린공원(5개소)

- 홍제공원(16,150㎡), 교동2공원(123,742㎡), 교동5공원(55,263㎡)
초당공원(14,507㎡), 북부공원(55,010㎡)

2) 문화공원(2개소)

- 교동7공원(314,251㎡), 포남2공원(239,798㎡)

3) 체육공원(3개소)

- 회산공원(32,987㎡), 교동6공원(183,915㎡), 포남1공원(170,547㎡)

4) 도시자연공원(2개소)

- 포남공원(89,716㎡), 두산공원(121,351㎡)

라. 계획시행자 : 강릉시

사. 승인기관 : 강릉시

아. 협의기관 : 원주지방환경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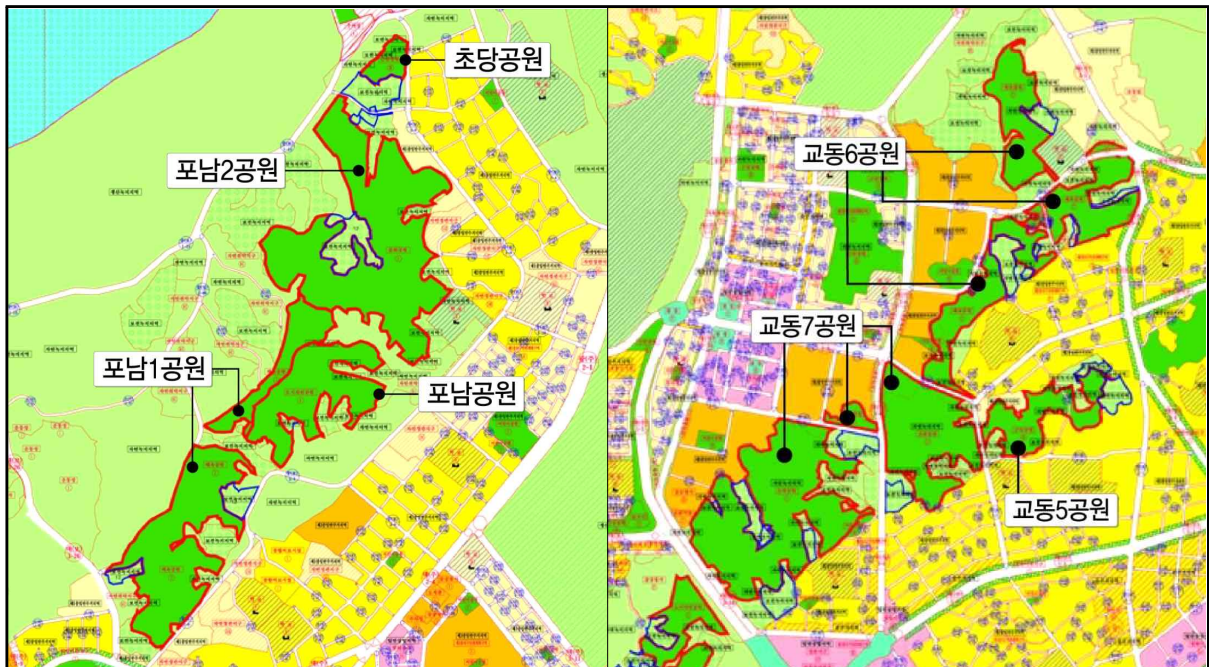
자. 계획의 내용 및 결정조서

<표 1.4-1> 공원결정(변경)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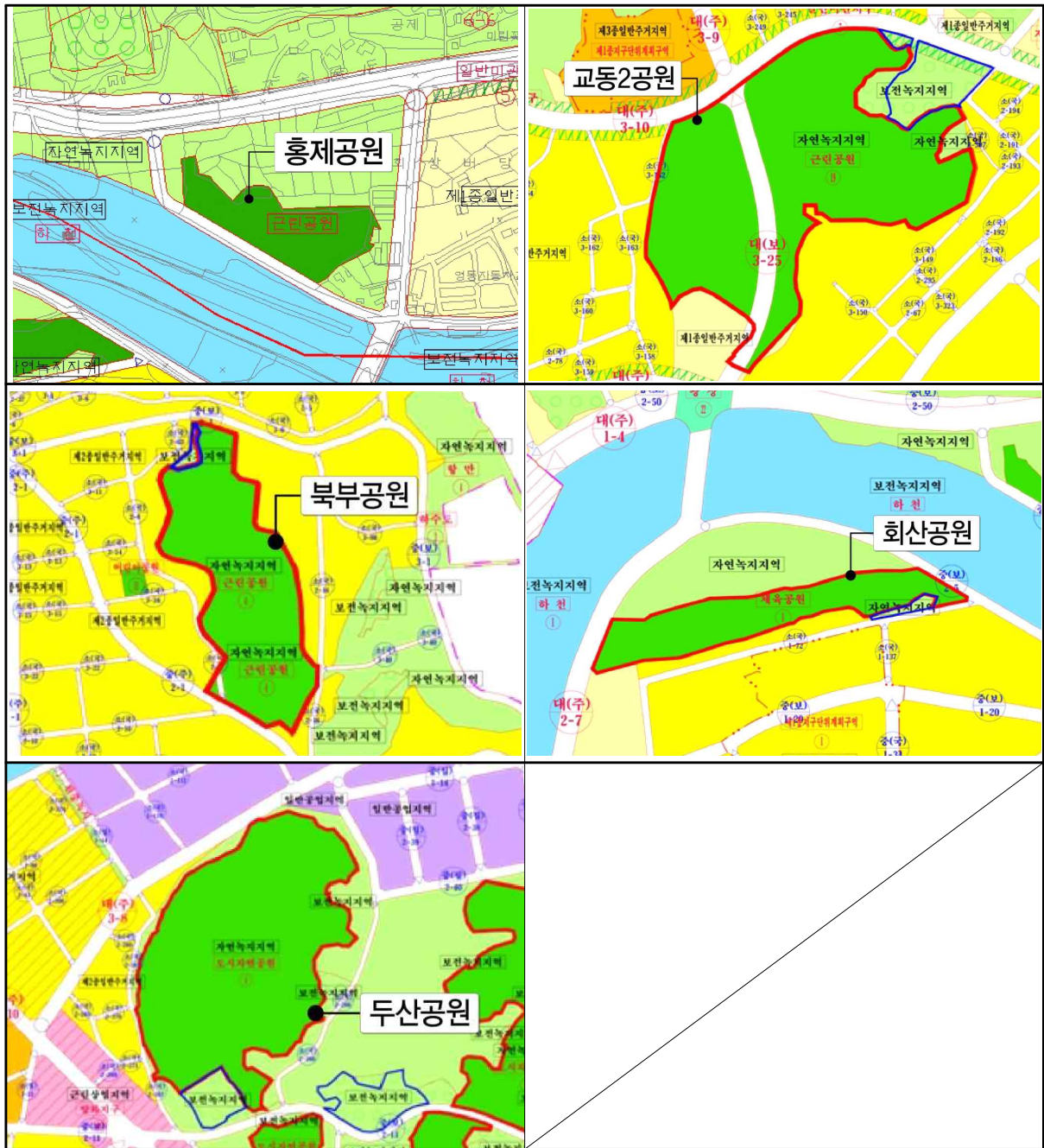
구분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홍제 공원	근린 공원	홍제동 763-3번지 일원	16,150	-	16,150	-
변경	교동2 공원	근린 공원	교동 산141번지 일원	135,022	감) 11,280	123,742	-

〈표 1.4-1〉 계속

구분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교동5 공원	근린 공원	교동 산195-1번지 일원	-	증) 55,263	55,263	도시자연 →근린
신설	초당 공원	근린 공원	초당동 289번지 일원	-	증) 14,507	14,507	도시자연 →근린
기정	북부 공원	근린 공원	주문리 산99-1번지 일원	60,784	감) 5,774	55,010	-
신설	교동7 공원	문화 공원	교동 산206번지 일원	-	증) 314,251	314,251	도시자연 →문화
신설	포남2 공원	문화 공원	포남동 산30번지 일원	-	증) 239,798	239,798	도시자연 →문화
변경	회산 공원	체육 공원	회산동 89번지 일원	-	증) 32,987	32,987	근린→ 체육
신설	교동6 공원	체육 공원	교동 산206번지 일원	-	증) 183,915	183,915	도시자연 →체육
신설	포남1 공원	체육 공원	포남동 산172-6번지 일원	-	증) 170,547	170,547	도시자연 →체육
기정	포남 공원	도시자 연공원	포남동 산215번지 일원	89,716	-	89,716	-
기정	두산 공원	도시자 연공원	두산동 산57-1번지 일원	121,351	-	121,351	-



(그림 1.4-1)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도



(그림 1.4-1) 계속



(그림 1.4-2) 계획지구 위치도

강릉시 공원조성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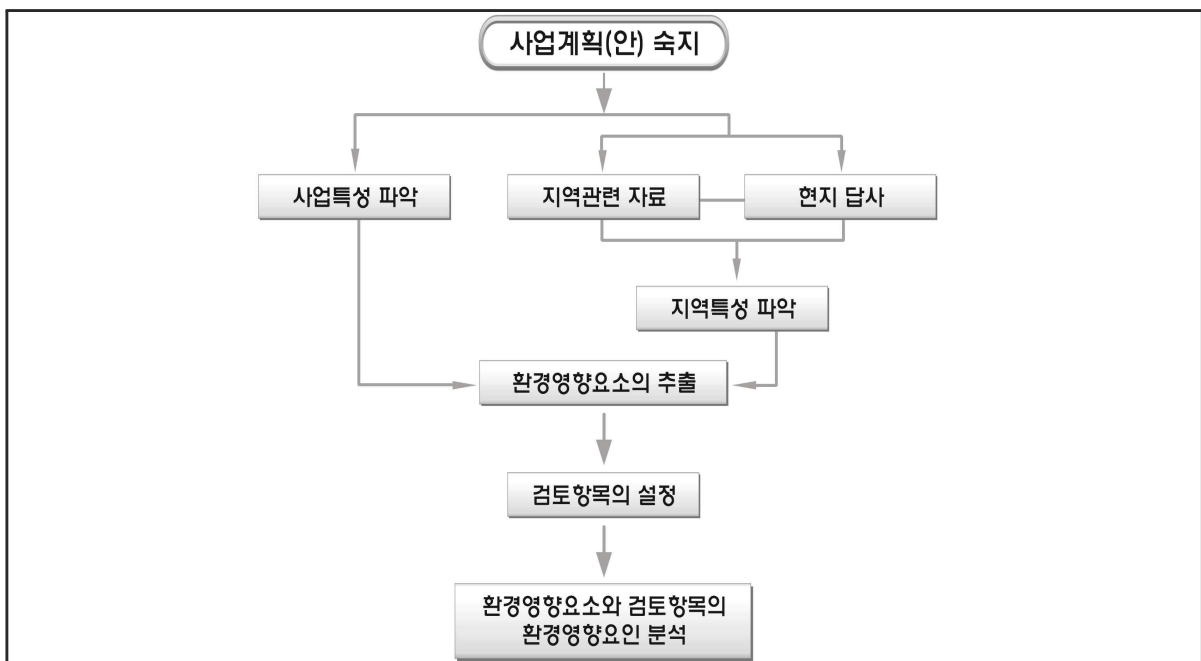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및 동법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사업의 유형 및 특성, 입지여건 및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하였다.

2.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2.2.1 환경영향요소 추출

공원조성계획에 따른 주요 행위의 특성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계획하천 및 주변의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환경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획수립시와 공사시로 구분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경제환경의 편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그림 2.2.1-1)의 절차를 이용하여 <표 2.2.1-1>과 같이 추출하였다.



(그림 2.2.1-1) 환경영향요소 추출 흐름도

〈표 2.2.1-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공사 단계	운영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지형의 변화 및 편입토지 발생 ○ 절·성토 사면 발생 ○ 소음·비산먼지 발생 ○ 강우시 우수 및 토사유출 ○ 공사인부 및 장비투입에 의한 폐기물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의 변화 ○ 계획지역 경관 변화 ○ 생활폐기물 발생

2.2.2 평가항목의 설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은 앞서 추출한 환경영향요소를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4.01.01, 환경부」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013.12.27, 환경부(환경부고시 제2013-171호)」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1, 환경부」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2]」에 제시된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선정하였다.

〈표 2.2.2-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선정

평가항목	설정사유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연계성 여부 검토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대안의 설정·분석을 통한 적정성 검토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계획시행에 따른 주변지역 동·식물의 서식지 훼손 및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공사시 절·성토 등으로 인한 지형변화 및 토량 이동에 따른 제반 영향 검토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 전·후의 경관변화 및 영향 검토
4) 수환경의 보전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하천에 미치는 영향검토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대기환경기준 부합성	○ 공사시 장비가동 및 토량 이동에 따른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 검토
2) 토양환경기준 부합성	○ 공사시 토공작업 및 장비가동 등으로 인한 토양에 미치는 영향 검토

〈표 2.2.2-1〉 계속

평가항목		설정사유
	3) 소음·진동환경기준 부합성	○공사시 장비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등으로 주변 정온 시설에 미치는 영향 검토
	4)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및 계획을 고려한 처리가능 여부 파악
	5)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공사시 작업인부 투입, 공사장비 운영에 따른 폐기물 발생 및 영향 검토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및 영향 검토
	2) 인구 및 주거	○계획시행에 따른 인구 및 주거의 변화 검토

〈표 2.2.2-2〉 평가 제외항목

제외항목	제외사유
악취	○사업시행으로 악취 영향 없음
해양환경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 없음
위생·공중보건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생·공중보건 영향 미미
전과장해	○사업시행으로 전과장해 영향 없음
일조장해	○사업시행으로 일조장해 영향 없음

2.2.3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변화, 오염원의 발생 등 주변지역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평가범위(조사) 및 예측·분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2.2.3-1〉 평가항목별 평가범위·예측·분석 방법

평가항목	대상지역 범위	예측·분석방법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조사내용 -생태자연현황(식생현황, 동·식물 및 서식 환경, 법정보호종 현황 등) ○조사범위 : 공사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지역(500m이내) 및 광역 조사지역 ○조사방법 -기존자료,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계획시행 전·후 식생, 동·식물상 변화 검토

〈표 2.2.3-1〉 계속

평가항목	대상지역 범위	예측·분석방법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조사내용 -지형형상, 지질상황, 토질성상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절·성토 및 부지정지 작업에 따른 지형변화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조사내용 :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조사범위 : 계획지구 주변 지역 및 조망 지역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계획시행에 따른 자연훼손 정도, 조망변화 예측
대기환경기준 부합성	○조사내용 -기상자료 분석 -계획지구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조사범위 : 계획지구 주변 1km 및 영향예상 지역 ○조사방법 : 현지조사	○지역 기상대의 기상자료 활용 (기초자료 확보) ○공사시 장비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영향검토
토양환경기준 부합성	○조사내용 -주변지역 토양오염도 -토양자동측정망 운영실태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공사시 지장물 철거 및 장비가동시 토양오염 영향검토
소음·진동 환경기준 부합성	○조사내용 : 현황조사 및 발생원 조사 ○조사범위 : 계획지구 주변 소음·진동 영향예상지역 ○조사방법 : 현지조사	○공사시 건설장비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검토 ○운영시 차량소음으로 인한 영향검토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조사내용 : 환경기초시설 현황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조사방법 : 문헌자료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 여부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조사내용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조사방법 : 문헌자료 조사	○계획지구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량 예측 ○발생폐기물 처리방안 수립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계획시행 전·후의 토지이용변화 예측 ○계획특성 고려 부지배치계획분석
인구 및 주거	○조사내용 : 인구 및 주거 현황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조사방법 : 문헌자료	○계획시행에 따른 인구 및 주거의 변화 검토

제3장 대안의 설정 및 검토

3.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대안이란 환경적 목표와 기준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한 여러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한다.

대안의 종류와 선정방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 2013-171호”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 2014. 1, 환경부”에 의거하여 계획비교 (No action, Action), 시기·순서에 대한 대안을 선정하였다.

〈표 3.1-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유무
계획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 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입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표 3.1-2〉 대안의 선정

대안종류	설정기준	내용	
계획비교	계획수립 여부	대안 1안	행정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Action)
		대안 2안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

3.2 대안의 설정

3.2.1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 검토

○ 본 개발기본계획을 수립(Action) 또는 현 상황을 유지(No Action)

가. 계획의 적정성 검토

〈표 3.2.1-1〉 계획의 적정성검토 비교

구 분	대 안			
	1 안		2 안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Action)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 (No Action)	
세부검토항목	검토 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검토 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가) 계획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① 국제 환경동향·협약·규범과의 부합성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몬트리올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람사협약, 철새보호협정 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는가?	yes	사업 특성상 국제적 환경동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적절한 저감방안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시행	-	해당사항 없음
○해당 계획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는가?				
○국제적인 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국제적 환경동향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yes	본 계획과 관련된 국제적 환경동향은 없으나 체계적인 계획 수립 시행	-	해당사항 없음
② 국가 환경기준·계획과의 부합성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yes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목표농도 설정	-	해당사항 없음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 및 시책(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비전21, 생물다양성국가전략,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환경보전중기계획, 물관리종합대책,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 등)에 부합하는가?	yes	각종 계획 및 시책에 부합하여 계획 수립	-	해당사항 없음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및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할당부하량의 준수가 가능한가?	yes	수질오염총량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환경계획 및 시책의 이행방안에 대하여 연차별 또는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실현가능한 계획인가?	yes	각종 계획 및 시책 실현 가능	-	해당사항 없음

* 주 : yes - 긍정적영향, no - 부정적영향, yes/no - 판단유보(중립)

<표 3.2.1-1> 계속

구 분	대 안			
	1 안		2 안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Action)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 (No Action)	
세부검토항목	검토 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검토 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③ 지역 환경기준·계획과의 부합성				
○지역환경기준 및 계획(시·도 환경보전계획, 지역환경계획, 지방의제21, 경관계획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yes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치 및 지역환경계획 적정 반영	-	해당사항 없음
○지역의 각종 조례(환경보전조례, 녹지보전조례, 자연경관보전조례 등)상의 환경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yes	해당지역의 상위계획 및 각종 조례를 반영하여 계획 수립	-	해당사항 없음
나)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① 환경계획의 건전성				
○국토의 생태적 건전성,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을 위해 통합적 네트워크 방안이 고려되었는가?	yes	관련 계획을 고려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을 위한 계획 수립	-	해당사항 없음
○광역적 생태·녹지축(백두대간, 정맥, 하천 등)보전 등 각종 보호지역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되었는가?	yes	사업시행에 따른 백두대간, 하천 및 정맥의 단절없음	-	해당사항 없음
○국토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차원에서 생활권 배분 등 공간계획이 효율적으로 계획되었는가?	yes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을 기초로 최대의 효율성을 고려함	-	해당사항 없음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여건변화와 관련 장단기적 보전대책을 감안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yes	해당분야별로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을 통한 저감방안을 수립 제시	-	해당사항 없음
② 지속가능성과의 부합성				
○지속가능발전(WSSD 이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yes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비전과 전략에 관련하여 자연생태, 생활환경 및 환경·경제 등 환경관리 분야에 대한 핵심전략과 이행과제를 적극 수립할 계획임	-	해당사항 없음
○개발계획의 수요·규모·수단 예측시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하게 검토, 분석되었는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지수의 목표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었는가?				
○인구의 증가, 자원수요, 에너지 수요 등 지구적·국가적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환경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가?				

* 주 : yes - 긍정적영향, no - 부정적영향, yes/no - 판단유보(중립)

<표 3.2.1-1> 계속

구 분	대 안			
	1 안		2 안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Action)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 (No Action)	
세부검토항목	검토 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검토 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다) 계획의 일관성				
① 수직적 일관성				
○ 상·하위 행정계획간 일관성 있게 계획되었는가?	yes	각종 상위 계획 및 관 계법령 검토하여 반영	-	해당사항 없음
② 타 행정계획과의 연계성				
○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 는가?	yes	각종 상위 계획 주변개 발계획, 관계 법령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본 사업이 일관되게 반영 될 수 있도록 함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8조의3 에 따른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등	yes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겠음	-	해당사항 없음

* 주 : yes - 긍정적영향, no - 부정적영향, yes/no - 판단유보(중립)

나. 입지의 타당성

〈표 3.2.1-2〉 입지의 타당성 검토비교

구 분	대 안			
	1 안		2 안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Action)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 (No Action)	
세부검토항목	검토 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검토 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① 생태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yes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분포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주요 산림축의 훼손을 초래하는가?	yes	백두대간에 저촉되는 지역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야생동·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우려되는가?	yes	주능선부 및 계곡을 고려한 보전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함	-	해당사항 없음
○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을 초래하지는 않는가?	yes	생태축·녹지축 등을 고려한 계획수립으로 생태적 단절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함	-	해당사항 없음
② 생물다양성·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가?	yes	각종 보호지역에 저촉되는 지역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의 가능성은 없는가?	yes	계획지구의 생태자연도는 1, 2, 3등급 지역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보전토록 함	-	해당사항 없음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공간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가?	yes	야생 동·식물의 서식공간에 대한 조사 후 최소화 계획을 수립함	-	해당사항 없음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③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높은 표고·급한 경사로 인한 과도한 지형훼손 여부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에 심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가?	yes	사면발생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지형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함	-	해당사항 없음
○ 수려한 경관, 특색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가?	yes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경관의 변화가 다소 예상되나 적정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	해당사항 없음
○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호소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가?	yes		-	해당사항 없음
○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심각한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가?	yes		-	해당사항 없음

* 주 : yes - 긍정적영향, no - 부정적영향, yes/no - 판단유보(중립)

<표 3.2.1-2> 계속

구 분	대 안			
	1 안		2 안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Action)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 (No Action)	
세부검토항목	검토 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검토 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①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미치는 영향				
○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추가 개발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어려움은 없는가?	yes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	-	해당사항 없음
○ 각종 환경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상되지는 않는가?	yes	각종 환경관련 보호지역에 저촉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이 급증하거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지는 않는가?	yes	수질오염총량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환경관련 법령, 고시, 훈령·예규, 지침 등을 준수하고 있는가?	yes	환경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친환경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	-	해당사항 없음
②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 개발과업의 입지로 생활환경(대기, 수질, 악취, 토양, 소음·진동, 지하수 등)이 악화되어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가?	yes	영향예측을 통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계획에 반영	-	해당사항 없음
○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 곤란 등으로 상승 또는 반복적인 민원이 뚜렷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가?	yes	저감대책 수립으로 민원을 방지하고 민원발생시 추가저감대책 수립	-	해당사항 없음
○ 녹지 훼손 등 과도한 지형변화가 예측되는 지역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가?	yes	지형변화를 최소화하여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함	-	해당사항 없음
③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 환경 및 생태적 보전을 위한 용도지역을 포함하고 있는가?	yes	환경 및 생태학적 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해당사항 없음
○ 수요예측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로 불필요한 개발용지의 확대 가능성 또는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연쇄적 개발 가능성은 없는가?(난개발 가능성)	yes	난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배제토록 계획함	-	해당사항 없음
대기타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8조의3에 따른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등	yes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을 수렴·반영토록 하겠음	-	해당사항 없음

* 주 : yes - 긍정적영향, no - 부정적영향, yes/no - 판단유보(중립)

다. 계획비교

행정계획 수립(Action) 및 행정계획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2.1-3〉 대안검토(행정계획 수립 및 행정계획 미수립)

평가영역	행정계획 수립시(Action)	행정계획 미수립시(No Action)
토지이용 측면	· 계획적인 토지이용으로 토지이용상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 무분별한 토지이용으로 효율성 및 토지이용계획상의 변화 없음
각종 보호지에 미치는 영향	· 야생 동·식물보호구역 등 보호지역이 분포하지 않음	· 보호지에 미치는 영향 없음
생태계훼손 가능성	· 공사에 따라 일부 생태계훼손의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됨	· 생태계변화 없음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 공사시 절·성토로 인한 불가피한 지형변화가 발생	· 지형의 변화가 없으므로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쾌적한 생활 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 공원 조성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종전보다 생활 환경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됨	· 생활환경의 변화가 없음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경관의 변화가 다소 예상되나 적정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사업을 시행함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없음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 사업시행으로 인한 유동인구증가, 교통 증가 등 질적인 삶은 향상되나, 이로 인하여 미미한 생활오염이 예상됨	· 환경기준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대안선정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효율을 증대 시키며, 체육시설과 휴양시설을 겸비한 국민관광휴양지 조성으로 도시발전의 활성화 를 가능케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을 시행(Action)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제4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4.1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및 동법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사업의 유형 및 특성, 입지여건 및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하였다.

4.2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 주 관 : 강릉시
- 일 시 : 2015년 5월 18일 ~ 2015년 6월 3일
- 개최방식 : 서면심의
-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총 10인

〈표 4.2-1〉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위원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위원장	강릉시 경제진흥국	국장	김남철	공무원
위 원	강릉시 녹지공원사업단	단장	김성유	공무원
	강릉시 환경정책과	과장	박영복	공무원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과장	류호일	협의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선효성	관계전문가
	강릉시의회	시의원	강희문	주민대표
	강릉시의회	시의원	허병관	주민대표
	강릉시의회	시의원	김남길	주민대표
	강릉원주대학교	도시계획심의위원	조태동	민간전문가
	강릉의제21	도시계획심의위원	이정임	민간전문가

4.3 협의회 심의의견

구 분	심 의 결 과	비 고
<p>김남철 국장 (강릉시 경제진흥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련된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항목의 중점 검토가 필요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에 관한 항목을 검토하여 보전 및 이용목적에 부합되도록 계획을 유도 ○ 주민 의견수렴시 향후 이용적, 관리적 측면에서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요인이 최소화되도록 검토 	
<p>김성유 단장 (강릉시 녹지공원사업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계획수립하기 바람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p>박영복 과장 (강릉시 환경정책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 인근마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환경분야 (대기환경, 소음·진동 등) 및 자연생태환경분야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는 평가범위 확대검토 필요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전략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의 항목, 기재사항, 작성방법 준수(※“동규정 별표1.3. 토지이용 구상안” 누락) ○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민원발생요인 사전해결 필요 	
<p>류호일 과장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업은 강원도 강릉시 일원의 도시공원(근린공원 5개소, 문화공원 2개소, 체육공원 3개소, 도시자연공원 2개소)조성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시 아래의 심의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 동 계획과 관련되는 기존 개발계획 및 상위계획(도시·군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관련 계획(환경관련계획 등)과의 부합여부를 조사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획부지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입지의 타당성을 중점 검토하여야 함. <p>※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환경부, '14.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13.12.) 참고</p>	

구 분	심 의 결 과	비 고
<p>류호일 과장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p>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p>가. 사업계획 부지와 주변지역의 지형, 수계 및 환경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직·간접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범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으로 설정하고, 그 범위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p> <p>※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환경부, '13.1.) 참고</p> <p>나. 사업계획 부지 주변의 운영 및 개발 예정사업 등을 포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동 사업과의 누적환경영향을 조사·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함.</p> <p>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분야는 계획대상지 및 주변 지역 경계부로부터 500m이내로 제시하였으나, 공사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그 외 광역 조사지역을 구분하여 평가 대상지역 설정</p> <p>2. 토지이용 구상안</p> <p>가. 사업계획 부지의 토지이용 합리화 및 그 기능 증진, 경관·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함.</p> <p>1) 현지형 및 기 훼손지역을 활용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은 인근마을 및 정온시설 등에서 조망에 따른 경관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선정·제시</p> <p>2) 양호한 식생과 자연지형 등은 최대한 보전하고 공원 조성 계획은 휴양·편익·조경·기반 시설 등의 구분을 세분화하여 제시</p> <p>나. 상위 환경정책 및 환경기준에서 설정하고 있는 보전 지역과 보전축 등의 환경보전 내용을 충분히 수용하여야 함.</p> <p>다. 공원 조성계획의 특성(유형, 성격, 규모), 주변 지역의 여건 및 환경적 요소, 저영향개발(LID)기술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p>	

구 분	심 의 결 과	비고
<p>류호일 과장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p>	<p>다. 공원 조성계획의 특성(유형, 성격, 규모), 주변 지역의 여건 및 환경적 요소, 저영향개발(LID)기술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p> <p>라. 공원별 기 조성된 시설물 및 훼손지 현황을 토지이용 계획도에 중첩하여 공원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종합적인 현황 분석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p> <p>3. 대안</p> <p>가. 해당 계획의 성격, 계획부지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적 측면에서의 사업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p> <p>나. 환경 친화적인 합리적(개발입지·항목별·토지이용계획 등)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p> <p>1) 각 대안은 비교·검토가 가능한 통합자료(대안별 도면, 사업내역 비교표 등)와 대안별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별자료(도면, 사업내용 및 주요 대안별 환경특징 등)로 구분하여 제시</p> <p>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p>가. 선정된 대안별로 세부항목에 따라 환경영향을 비교·평가 하되, 다음의 항목에 대해 중점 검토하고 사업 계획에 따른 영향 예측 및 저감 계획 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함.</p> <p>1) 사업계획 부지의 인근 마을 및 정온시설에 대한 대기질, 소음·진동등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강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시설물의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및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등 그린인프라 구축 방안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13.1.)」 참고 - 대기항목(PM2.5 등)에 대한 영향예측 	

구 분	심 의 결 과	비 고
<p>류호일 과장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p>	<p>2) 「생태면적률 적용지침('11.6월, 환경부)」에 따라 현재 상태 생태면적률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목표생태면적률을 산정·제시</p> <p>3)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녹지자연도 7등급이상 지역, 녹지자연도 6등급이상 경사도 20°이상 지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생태계 및 생태·녹지축, 자연경관 등의 면밀한 조사와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 및 보전방안 검토</p> <p>4) 상수원(상수원보호구역, 취수시설 등) 및 하천수질보전(저수지, 국가하천·지방하천 등), 지하수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입지 제한사항 등을 고려한 입지적합성 검토·제시</p> <p>나.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적사항, 근거자료 등을 반드시 수록·제시하여야 함.</p> <p>- 문헌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최대 10년 간) 활용</p> <p>※ 「환경영향평가등의 자연생태조사 기초자료 작성에 관한 지침(환경부, '13.3.)」 참고</p>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p>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함.</p> <p>6. 기 타</p> <p>가.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운영지침(환경부, '12.10.)」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를 작성·제시하여야 함.</p>	
<p>선효성 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p>	<p>○ 12개소의 도시공원 입지지역에 대한 자연환경적 현황(녹지자연도 및 영급 분포, 지형·식생·경간적 현황 등)과 토지이용계획(시설물 종류 및 분포 등)의 비교·검토를 통한 적정성 분석</p> <p>○ 도시공원 입지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식생 등 생태적 현황이 양호할 경우 과도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산림식생 등 생태서식공간을 최대한 원형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계획</p>	

구 분	심 의 결 과	비고
<p>선효성 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산공원 및 홍제공원의 경우 남대천 주변에 입지하고 있으며, 인근에 홍제2정수장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원구역내 오수 및 비점오염 등이 발생하는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수질영향을 최소화 ○ 교동2공원, 교동6공원, 교동7공원, 포남2공원, 포남1공원, 포남공원 등에 대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분포하는 영역은 기존 산림식생 등 생태서식공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계획을 수립 ○ 도시공원 입지지역 주변 타 개발계획의 현황을 파악하고 본 사업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 ○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산된 일부 공원(포남공원, 포남1공원, 포남2공원 등)을 통합하여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p>강희문 시의원 (강릉시의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항목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 보호 동,식물 등 보전방안 및 주변 식생 보호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p>허병관 시의원 (강릉시의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에 대한 영향 검토를 통한 쾌적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것 ○ 도심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인근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을 고려할 것 ○ 녹지연결 네트워크 수립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 주민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 	
<p>김남길 시의원 (강릉시의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적인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수립하기 바람 ○ 산림훼손 및 시설물 설치 최소화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제시한 바와 같이 의견수렴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p>조태동 교수 (도시계획 심의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평가항목(p.58)에서 조사범위 : 계획지구 주변 500m 또는 300m 이내에 대한 근거자료가 필요함. 	
<p>이정임 위원 (도시계획 심의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세부조성계획 수립을 통한 편익시설 조성으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p style="text-align: center;">강릉시 공원조성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실현을 위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p><input type="checkbox"/> 항목별 결정 내용에 대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의견없음 ○ 대안의 설정 의견없음 ○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련된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항목의 중점 검토가 필요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에 관한 항목을 검토하여 보전 및 이용목적에 부합되도록 계획을 유도 ○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안 주민 의견수렴시 향후 이용역, 관리적 측면에서 사업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요인이 최소화되도록 검토 ○ 기타 의견 없음 </div> <p style="text-align: center;">상기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5년 5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원 : (서명 또는 날인)</p> <p>강릉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강릉시 공원조성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계획수립하기 바람 <p><input type="checkbox"/> 항목별 결정 내용에 대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생물다양성, 대기, 소음 및 진동을 고려한 대상지역의 환경영향범위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대안의 설정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수환경의 보전,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등의 항목을 선정할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안 제시한 마와 같이 실행하기 바람 ○ 기타 의견 없음 </div> <p style="text-align: center;">상기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5년 6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원 : (서명 또는 날인)</p> <p>강릉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강릉시 공원조성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나, ○ 사업지 인근마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환경분야(대기환경, 소음·진동 등) 및 자연생태환경분야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는 평가범위 확대검토 필요 <p><input type="checkbox"/> 항목별 결정 내용에 대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설정되었음 ○ 대안의 설정 - 비교적 적당하게 설정되었음 ○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나, 사업지 인근마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환경분야(대기환경, 소음·진동 등) 및 자연생태환경분야의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는 평가범위 확대검토 필요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의 항목, 기재사항, 작성방법 준수(※ "동규정 별표1. 3. 토지이용 구상안" 누락) ○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안 -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민원발생요인 사전제거 필요 ○ 기타 - 의견없음 </div> <p style="text-align: center;">상기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5년 5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원 : 강릉시 환경정책과장 박 영복(서명 또는 날인) </p> <p>강릉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서 【강릉시 공원조성계획 수립】</p> <p><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업은 강원도 강릉시 일원의 도시공원(근린공원 5개소, 문화공원 2개소, 체육공원 3개소, 도시자연공원 2개소)조성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시 아래의 심의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 동 계획과 관련된 기존 개발계획 및 상위계획(도시·군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관련 계획(환경관리계획 등)과의 부합여부를 조사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획부지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입지의 타당성을 중점 검토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매뉴얼」(환경부, '14.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13.12) 참고 <p><input type="checkbox"/>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p>가. 사업계획 부지와 주변지역의 지형, 수계 및 환경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직·간접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범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그 범위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환경부, '13.1) 참고</p> <p>나. 사업계획 부지 주변의 운영 및 개발 예정사업 등을 포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동 사업과의 누적환경영향을 조사·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함.</p> <p>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분야는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경제부로부터 500m이내로 제시하였으나, 공사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그 외 광역 조사지역을 구분하여 평가 대상지역 설정</p>

<p>2. 토지이용 구상안</p> <p>가. 사업계획 부지의 토지이용 합리화 및 그 기능 증진, 경관·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함.</p> <p>1) 현지형 및 기존지역을 활용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은 인근마을 및 경관시설 등에서 조망에 따른 경관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선정·제시</p> <p>2) 양호한 식생과 자연지형 등은 최대한 보전하고 공원조성 계획은 휴양·편익·조경·기반 시설 등의 구분을 세분화하여 제시</p> <p>나. 상위 환경정책 및 환경기준에서 설정하고 있는 보전지역과 보전측 등의 환경보전 내용을 충분히 수용하여야 함.</p> <p>다. 공원 조성계획의 특성(유형, 성격, 규모), 주변 지역의 여건 및 환경적 요소, 지형상태(LID)기술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p> <p>라. 공원별 기 조성된 시설물 및 훼손지 현황을 토지이용계획도에 중첩하여 공원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종합적인 현황 분석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p> <p>3. 대안</p> <p>가. 해당 계획의 성립, 계획부지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적 측면에서의 사업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p> <p>나. 환경 친화적인 합리적(개발일차·차량별·토지이용계획 등)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 설정 분석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p> <p>1) 각 대안은 비교·검토가 가능한 통합자료(대안별 도면, 사업내역 비교표 등)와 대안별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별자료(도면, 사업내용 및 주요 대안별 환경특성 등)로 구분하여 제시</p>	<p>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p>가. 선정된 대안별로 세부항목에 따라 환경영향을 비교·평가 하되, 다음의 항목에 대해 중점 검토하고 사업계획에 따른 영향 예측 및 저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함.</p> <p>1) 사업계획 부지의 인근 마을 및 경관시설에 대한 대기질, 소음·진동 등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강구 - 각종 시설물의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및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등 그린인프라 구축 방안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지침(13.1)」 참고 - 대기항목(PM₁₀, 등)에 대한 영향예측</p> <p>2) 「생태면적률 적용지침(11.6월, 환경부)」에 따라 현재 상태 생태면적률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목표생태면적률을 산정·제시</p> <p>3)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녹지자연도 7등급이상 지역, 녹지자연도 6등급 이상 경사도 20°이상 지역,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생태계 및 생태·녹지축, 자연경관 등의 밀집된 조사와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 및 보전방안 검토</p> <p>4) 상수원(상수원보호구역, 취수시설 등) 및 하천수질보전(거수지, 국가하천·지방하천 등), 지하수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입지 제한사항 등을 고려한 입지적합성 검토·제시</p> <p>나.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 하고, 조사자의 인적사항, 근거자료 등을 반드시 수록·제시하여야 함. - 문헌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최대 10년 간) 활용 ※ 「환경영향평가 등의 자연생태 조사 기초자료 작성에 관한 지침(환경부, 13.3)」 참고</p>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p>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 하고,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함.</p>
<p>6. 기 타</p> <p>가.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운영지침(환경부, 12.10)」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윤리 등의 원도급 및 하도급을 검토서”를 작성·제시하여야 함.</p> <p style="text-align: right;">2015. 5. .</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회원 류 호 일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강릉시 공원조성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p> <p>○ 본 건은 강릉시 일원의 도시공원(12개소, 면적 1,417,237㎡) 조성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검토의견임</p> <p><input type="checkbox"/> 항목별 결정 내용에 대한 의견</p> <p>○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p> <p>○ 대안의 설정 - 의견 없음</p> <p>○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의견 없음</p> <p>○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안 - 의견 없음</p> <p>○ 기타</p> <p>- 12개소의 도시공원 입지지역에 대한 자연환경적 현황(녹지자연도 및 영급 분포, 지형·식생·경관적 현황 등)과 토지이용계획(시설물 종류 및 분포 등)의 비교·검토를 통한 적정성 분석</p> <p>- 도시공원 입지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식생 등 생태적 현황이 양호할 경우 과도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산림식생 등 생태서식공간을 최대한 원형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계획</p> <p>- 최산공원 및 홍재공원의 경우 남대원 주변에 입지하고 있으며 인근에 홍재2정수장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원구역내 오수 및 비점오염 등이 발생하는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수질영향을 최소화</p> <p>- 교동2공원, 교동유수원, 교동7공원, 포남2공원, 포남1공원, 포남공원 등에 대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분포하는 영역은 기존 산림식생 등 생태서식공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계획을 수립</p> <p>- 도시공원 입지지역 주변 단 개발계획의 행위를 파악하고 본 사업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p> <p>-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산화된 일부 공원(포남공원, 포남1공원, 포남2공원 등)을 통합하여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p> </div> <p style="text-align: center;">상기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5년 6월 1일</p> <p style="text-align: right;">위원 : 선 효성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강릉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강릉시 공원조성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p> <p><input type="checkbox"/>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항목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p> <p><input type="checkbox"/> 항목별 결정 내용에 대한 의견</p> <p><input type="checkbox"/>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피해없음.</p> <p><input type="checkbox"/> 대안의 설정 생태적 안정성과 환경영향에 대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보통 동,식물 등 보전방안 및 주변 시설 보전방안을 수립하기 바람</p> <p><input type="checkbox"/>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안 제시한 바와 같이 의견수렴 바람</p> <p><input type="checkbox"/> 기타 의견 없음</p> </div> <p style="text-align: center;">상기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5년 5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원 : 김희준 (서명)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강릉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강릉시 공원조성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p> <p><input type="checkbox"/> 환경에 대한 영향 검토를 통한 쾌적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항목별 결정 내용에 대한 의견</p> <p><input type="checkbox"/>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도심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인근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을 고려할 것</p> <p><input type="checkbox"/> 대안의 설정 녹지연결 네트워크 수립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환경영향평가 항목인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등이 적절히 반영되었고 평가범위 설정 및 평가방법의 설정도 적절하게 계획됨</p> <p><input type="checkbox"/>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안 주민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기타 의견 없음</p> </div> <p style="text-align: center;">상기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5년 5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원 : 최병관 (서명)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강릉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강릉시 공원조성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p> <p><input type="checkbox"/> 환경적인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수립하기 바람</p> <p><input type="checkbox"/> 항목별 결정 내용에 대한 의견</p> <p><input type="checkbox"/>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사업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대상지역 설정은 타당함</p> <p><input type="checkbox"/> 대안의 설정 신항해운 및 시설물 설치 최소화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p> <p><input type="checkbox"/>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사업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평가항목 및 범위는 타당하다고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안 제시한 바와 같이 의견수렴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하기 바람</p> <p><input type="checkbox"/> 기타 의견 없음</p> </div> <p style="text-align: center;">상기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5년 5월 29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원 : 김희준 (서명)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강릉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강릉시 공원조성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p> <p><input type="checkbox"/>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평가항목(P.58)에서 조사범위 : 계획지구 주변 500m, 또는 300m 이내의 대한 근거자료가 필요함.</p> <p><input type="checkbox"/> 항목별 결정 내용에 대한 의견</p> <p><input type="checkbox"/>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p><input type="checkbox"/> 대안의 설정</p> <p><input type="checkbox"/>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p> <p><input type="checkbox"/>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안</p> <p><input type="checkbox"/> 기타</p> </div> <p style="text-align: center;">상기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5년 05월 29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원 : 조태동 교수</p> <p style="text-align: center;">강릉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강릉시 공원조성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 수립은 좋으나 행정시설 조성으로 시인도가 상대적으로 강릉시에서 이용하기 어렵다.</p> <p><input type="checkbox"/> 항목별 결정 내용에 대한 의견</p> <p><input type="checkbox"/>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없음.</p> <p><input type="checkbox"/> 대안의 설정 없음.</p> <p><input type="checkbox"/>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없음.</p> <p><input type="checkbox"/>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안 없음.</p> <p><input type="checkbox"/> 기타</p> </div> <p style="text-align: center;">상기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5년 5월 20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원장 : 이정인 (서명하는 날인)</p> <p>강릉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p>	